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심사보고

2002. 11. 11.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2년 10월 30일

○ 회부일자 : 2002년 10월 31일

다. 상정일자 : 제20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2002. 11. 8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의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주 준 길)

가. 제안이유

- 우리도 체육계의 오랜 숙원사업인 레슬링, 역도 등 8개 투기종목 전용 훈련장 확보 및 2004년 전국체전 시 대회운영본부 와 프레스 센터로 활용할 「충북다목적체육관」을 건립코자,
- 지난 3월 제198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받았으나, 충청북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실시설계결과 건축연면적과 사업비 변경사항이 발생하였고,

- 소방본부의 소방항공대 설치운영 계획에 따라 인명구조 및 화재 진압능력 제고를 위한 헬기구입 사유가 발생하여,
-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공유재산관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의결을 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재산의 취득

« 다목적체육관 건립계획 변경 »

- 위 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808-6번지
- 사업기간 : 2002. 3월 ~ 2004. 7월
- 용 도 : 체육시설
- 사업변경내역
 - 연 면적 : (당초) 9,256m' 지하2,지상5 (변경) 11,125m' 지하2,지상8
 - 총사업비 : (당초) 103억원 (변경) 120억원
 - 도 비 : (당초) 63억원 (변경) 50억원

« 소방헬기 구입 »

- 구입수량 : 1대
- 구입시기 : 2003년
- 용 도 : 인명구조, 화재·산불진압, 항공방재 등
- 사업비 : 70억원(국비 35억원, 도비 35억원)

3. 검토보고 요지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한상혁)

○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승인의 건을 검토한 바

이는 신축 중에 있는 충북다목적체육관을 증축하고, 소방헬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2003년도 당초예산 편성 전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으로,

○ 다목적체육관 건립계획 변경은

제198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02. 3. 22)에서 사업비 103억원, 연면평 2,800평(부지 1,000평, 지상 5층, 지하 2층) 규모의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여 청주시로 무상양여하는 계획을 의결하였으나,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실시설계결과 건축 연면적의 증가와

교부세 30억원의 추가 확보에 따라

사업비는 103억원 → 120억원(17억원 증)으로,

건축연면적은 2,800평 → 3,365평(565평 증)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이나,

건축연면적 565평의 증가사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 소방헬기 구입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항공대를 설치 운영하고자 소방헬기를 구입하려는 것이나,

2000년부터 2002년 9월말까지 현재 헬기이용 실적을 보면, 총53회로 이중 43회(산림청 및 군부대 헬기이용)는 산불진화 등에 활용하고 산악구조 실적은 10회로 년 평균 3.3회 활용을 위하여,

헬기구입비 70억원(국비 35, 도비35)과 연간운영비 661백만원이 소요될 뿐 아니라, 헬기구입에 따른 유조차 구입비 80백만원과 유지관리운영비, 격납고 및 계류장 설치운영비 등 막대한 예산의 투자 필요성과

산림청에서 진천군 문백면 옥성리 군유지에 국비 37억원을 투자 충청권(충남·북) 산불진화 등에 활용하고자 산림청 헬기(6대) 격납고를 설치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의 활용가능성 여부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 의견 요지

- 설계변경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요인 발생시 도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실시설계 및 착공함으로써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할 것과,
- 다목적 체육관의 기능에 생활체육시설 확보 등 다양한 기능이 되도록 하여줄 것을 당부함.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